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국번없이 1350),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,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
■ 사업목적

-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■ 지원대상(수급자격 요건)

-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

필요요건		연령	가구단위 소득	가구원 재산	취업경험	
I 유 형	요건심사형	15~69세	중위소득 60% ↓	4억원 이하 (청년: 5억원 이하)	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	
	선발 형	비경활	15~69세	중위소득 60% ↓	4억원 이하	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		청년*	15~34세 + 병역의무 이행기간 (최대3년)	중위소득 120% ↓	5억원 이하	무관
II 유 형	특정계층	15~69세	무관	무관	무관	
	청년*	15~34세 + 병역의무 이행기간 (최대3년)	무관			
	중장년	35~69세	중위소득 100% ↓			

* 청년연령은 2024.2.9. 신청자부터 적용 (2024.2.9. 이전 신청시 청년연령은 18~34세임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없음))

지원내용

-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

구분	취업지원서비스	소득 지원
I 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담·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, 취업지원 경로(IAP) 설정 • 직업훈련·일경험·창업·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(생계, 의료, 금융, 돌봄서비스 등) 등 연계 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【구직촉진수당】 월50만원 + 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(월 최대 40만원) 추가지원 × 6개월 * 부양가족: 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 • 【조기취업성공수당】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지급 • 【취업성공수당】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)
II 유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【취업활동비용】 최대 195.4만원* *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~25만원,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(월28.4만원×6개월) 등 • 【조기취업성공수당】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(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) • 【취업성공수당】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및 특정계층)

사업추진체계

